

목 차

100 기본규정

101 가평군장애인체육회 규정.....	3
-----------------------	---

200 기획 및 조직

201 가평군 가맹단체 규정.....	18
202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34

300 위원회

301 임원심의위원회 규정.....	38
30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47

400 사무관리

401 사무국 운영 규정.....	66
402 근무성적 평가 내규.....	112

100 기본규정

101 가평군장애인체육회 규정

가평군장애인체육회 규정

제정 2017. 03. 07

개정 2018. 09. 11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목적) ① 이 규정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하 “도장애인체육회” 라 한다) 규약 제5조에 의해 지부로 설치된 가평군장애인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명칭은 가평군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 라 한다)로 하며, 영문으로는 Gapyeong-Gun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해당지역의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 라 한다)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장애인의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가평군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각 가맹단체와 읍면장애인체육회의 지원·관리
3.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
4. 시·군 및 도내외 장애인체육 교류
5.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주최·주관·후원·지원 등
6.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도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훈련 및 참가
7.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장애인체육의 육성
8.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 체육의 육성

9.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10.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11.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12. 지역의 장애인 체육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자문
13. 목적달성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조 직) ① 본회가 가맹을 승인한 종목별 가맹단체로 조직한다.

- ② 본회 산하에 읍면장애인체육회를 둘 수 있으며, 읍면장애인체육회는 본회 지회로 하되 가맹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권 리) 본회는 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2. 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도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4. 도장애인체육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의 무) 본회는 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도장애인체육회의 규약, 제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보고서,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도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준하여 본회 규정을 제정하여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선임 및 개선이 있을 때마다 이를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맹단체 및 읍면장

애인체육회 임직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본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1.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단체의 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단체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9조(가맹 및 탈퇴) ① 제5조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단체는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③ 본회는 도장애인체육회 『가맹·탈퇴규정』을 준용하여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본회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35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 2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이하 “총회” 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회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추대하며,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 ② 본회 당연직 부회장은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는 행복돌봄과장, 문화체육과장, 가평복지재단 국장, 가평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으로 하며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대의원은 감사 외의 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 ⑤ 임원의 취임은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⑦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포함하여 선임한다.

- 제13조(임원의 사임)** ①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이 사임원을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5조 1항의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될 때
 2. 제12조 2항에 정하는 당연직이사의 경우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3.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회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⑥ 임원의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⑦ 임원이 본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귀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8. 본회 또는 가맹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9. 본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본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해당 종목관련 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 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이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 당연히 사임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보수규정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 4 장 대의원총회

제17조(구성) ① 총회는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가맹단체의 장

2. 읍면지회의 장

② 해당 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이 총회 3일 전에 본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한 대의원을 교체할 수 없다.

⑤ 1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 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14조 5항 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2호 내지 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20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 하여야 한다.

-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해당 임원은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한다.
-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장 임면동의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 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5항 4호의 보고를 위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28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의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2. 임원심의위원회

② 기타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와 제2항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와 제2항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

제29조(가맹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본회의 가맹단체 조직, 운영등에 관해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가맹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가맹단체의 임원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본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로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제31조(읍면장애인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본회는 지회인 읍면장애인체육회를 둘 수 있다.

- ② 읍면장애인체육회는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읍면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읍면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읍면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인준 등) ① 읍면장애인체육회 임원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읍면장애인체육회는 학교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로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 잉여금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4조(재원)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회를 운영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가맹단체 및 임원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7. 기타 수입금

제35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 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가맹단체, 본회 및 가맹단체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가맹단체, 본회 및 가맹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 외의 재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 등) ① 회계감사는 연1회 실시한다.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 9 장 사무국

제41조(사무국)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가평군체육회 사무국장이 겸직한다.

④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제15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2조(사무국 직제 및 규정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3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군수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거쳐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4조(규정의 변경) 본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규정의 제·개정) ① 본회는 도장애인체육회 『시군지부 운영규정』에 따라 본회의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본회 운영 등에 관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 한다.

③ 본회의 인사, 복무, 직제 등 예산을 수반하는 제규정의 제·개정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제규정은 도장애인체육회의 사전협의를 거친다.

제46조(규정의 해석 등) ① 본회의 규정은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 규정에 우선하며,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가 도장애인체육회 규약, 본회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7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 11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200 기획 및 조직

201 가평군 가맹단체 규정

가평군 가맹단체 규정

제정 2018. 02. 08.

제1장 총 칙

제1 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가평군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정 제5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경기단체, 읍면장애인체육회 및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가맹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가평군장애인○○○협회(회 또는 연맹)라 하고,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 조(목적 및 지위) ① 가맹단체는 소관 경기종목을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가평군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가맹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회원단체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가평군을 대표한다.

제3 조(소재지 등) 가맹단체의 사무소는 가평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 조(사업) ① 가맹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전국·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의 가평군규모연맹체 및 장애인체육동호인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해당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해당 가맹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가맹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가맹단체는 읍·면종목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 할 수 있다. 다만, 가평군 및 경기도 규모의 사업은 가맹단체 또는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하여야 한다.

③ 가맹단체는 제1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 할 수 없다.

④ 종목별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가맹단체는 제4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종목별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본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가맹단체는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의 회원단체를 둘 수 있다.

1. 읍·면종목단체

2. 등록팀 및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

② 가맹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가맹단체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 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가맹단체는 군 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맹단체는 군 규모연맹체에게 경기도 규모의 대회를 제외한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⑥ 가맹단체에 대한 군 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본회 규정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회비의 납부) 가맹단체는 본회가 정한 회비를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 7 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가맹단체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읍·면종목단체의 장
2.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조직 단체의 장
3. 군규모연맹체의 장
4. 읍·면종목단체,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조직 단체 등 대의원 수가 5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선수 및 동호인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가맹단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가맹단체의 해산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읍·면종목단체,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조직, 군 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가맹단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8 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가맹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② 가맹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가맹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가맹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맹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 감사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

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가맹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가맹단체의 장이 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가맹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가맹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가맹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가맹단체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가맹단체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

② 가맹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의 소집) ① 가맹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가맹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가맹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가맹단체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가맹단체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가맹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가맹단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3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가맹단체의 임원은 해당 가맹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은 가맹단체에서 따로 정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상위 단체 회장 선출 방법을 준용한다.

③ 회장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경기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1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가맹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가맹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5%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1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1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가맹단체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⑥ 본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다.

⑦ 가맹단체의 대의원은 본회 이사 및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가맹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동일인이 다른 가맹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가맹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가맹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가맹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가맹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가맹단체의 임원이 체육단체(본회, 다른 가맹단체 및 읍·면종목 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가맹단체의 임원이 가맹단체(본회, 다른 가맹단체 및 읍·면종목 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본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가맹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읍·면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가맹단체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가맹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시 다른 가맹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단체의 임원은 본회 규정 제28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맹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가맹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3.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가맹단체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체육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문화체육 관광부 산하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가맹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가평군장애인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본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에 해당하는 때
3. 가맹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 6 장 읍면 종목단체

제27조(지위 및 명칭) ① 읍·면종목단체는 군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각 읍·면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읍·면종목단체는 등록팀 및 체육 동호인조직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8조(읍면종목단체의 총회) ① 읍면종목단체의 대의원은 읍면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해당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읍면종목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읍면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선수 및 동호인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읍면종목단체의 장이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읍·면장애인체육회 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읍면장애인체육회는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0조(총회의 소집) 읍면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읍·면

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1조(읍면종목단체의 규정 등) 읍면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읍면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임원인준 등) 읍면종목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읍면장애인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규정 승인) ① 읍면종목단체는 제32조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읍면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읍면장애인체육회는 읍면종목단체가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군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읍면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군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읍면종목단체는 군종목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에 규정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군종목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읍면종목단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③ 가맹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읍면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읍면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읍면장애인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애인체육회는 본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및 경기도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본회 규정 제9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읍면장애인체육회는 본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7 장 각종위원회

제3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가맹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 기구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2. 임원심의위원회

② 가맹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맹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가맹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재원) 가맹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가맹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 및 임원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7.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9조(잉여금의 처리) 가맹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0조(재산의 관리) ① 가맹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자 할 때,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가맹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가맹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가맹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 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가맹단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임직원
2. 가맹단체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와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2조(회계연도) 가맹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가맹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 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가맹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감사 등) ① 가맹단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가맹단체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맹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45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가맹단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4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본회가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46조(사무국) ① 가맹단체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가맹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7조(사무국의 운영 등) 가맹단체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채용시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48조(해산) ① 가맹단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가맹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가맹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9조(규정변경) ① 가맹단체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함)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인정단체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의 규정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본회가 가맹단체의 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규정 제·개정 등) ① 가맹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가맹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가맹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가맹단체의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가맹단체의 규정에 우선하며, 가맹단체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가맹단체의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가맹단체가 본회의 규정,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제한사항) 가맹단체가 본회의 규정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본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규정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3조(경영공시) ① 가맹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가맹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1장 부 칙 <제정 2018. 02. 0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제정 2018. 02.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평군장애인체육회 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9조 제3항에 따른 가맹단체의 가평군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본회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본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본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가맹단체 규정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입신청서류)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가맹단체는 이를 상정할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3개월 이전(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본회 양식)
2. 단체 연혁
3. 임원 명단(취임승낙서,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첨부)
4. 단체의 규정
5. 종목개요 및 종목관련 제 규칙
6.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 종목단체 현황
7. 선수, 팀, 동호인조직 및 스포츠클럽 등 등록현황
8.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9.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10. 가입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가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경기도 및 가평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가평군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가맹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1회 이상일 것
 5.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6. 본회의 규정 및 ‘가맹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가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국 및 가평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가평군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5. 본회의 규정 및 ‘가맹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회 규정 제9조에 따른다.

-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준회원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종목은 정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는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제7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탈퇴하게 한다.

1. 가맹단체가 본회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가맹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가맹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회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가맹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가맹단체인 경우

② 가맹단체가 해산한 경우 본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탈퇴신청) 가맹단체가 본회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부 칙 <제정 2018. 02.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00 위원회

301 임원심의위원회 규정

임원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8. 02. 08.

제 1 조(설치근거) 가평군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정 제28조에 따라 임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이내
3.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두며, 감사를 간사로 한다.

제 3 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체육계·법조계·학계·경제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 및 중앙,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 및 중앙,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3.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제 4 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5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 7 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골고루 발언하고 동등한 자격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원의 심의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임원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이나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후보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원 후보자는 위원장이나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협조 요구)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는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회의의 참석 등의 협조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대상) 「가맹단체 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과 읍·면 체육회의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심의절차) ①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는 임원 후보자가 1회 이상 당해 단체의 임원직을 중임한 경우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장이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라 심의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정부 및 체육단체 포상, 체육단체 참여율, 단체공헌도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심의기준표를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4조(심의결과) 위원회는 별표 1의 심의기준표를 참작하여 그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제15조(재심요구) ① 제14조의 의결에 따라 중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요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가 제출한 재심 요구 취지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8. 02. 08.>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 의 기 준 표

1. 재정 기여도(25%) *해당 단체명의 통장에 입금된 출연금 기준

대상	평가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임원	출연금	A. 3백만원 이상 B. 1백만원 이상 ~ 3백만원 미만 C. 5십만원 이상 ~ 1백만원 미만 D. 3십만원 이상 ~ 5십만원 미만 E. 3십만원 미만	25	25	20	15	10	5

 적용 예

- ☞ 임원 재정기여도가 4년간 각각 5십만원, 1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으로 총재정기여도가 8,500만원/4년= 2,125천원
- ☞ 임원재임기간 평균기여도 2,125천원을 세부평가 영역에 적용 = B : 20점 획득

2. 재임 기간 내 정부 및 체육단체 포상 등급(15%)

대상	평가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임원	포상평가	A. 50점 이상 B. 35점 이상~50점 미만 C. 20점 이상~35점 미만 D. 5점 이상~20점 미만 E. 5점 미만	15	15	12	9	6	3

- 평가지표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및 체육단체장이 수여한 포상 점수
- 포상 수여에 점수 적용표

구분	훈장	포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점수	50	45	40	35	30
구분	광역단체장상	중앙단체장상	기초단체장상	시·도단체장상	도종목/시군 단체장상
점수	25	20	15	10	5

- 장관상 :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 중앙체육단체상 : 대한(장애인)체육회장·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표창
- 시·도단체장상 : 시·도체육(장애인)회장 표창
- 종목/시·군단체장상 :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장애인)체육회장 표창
- * 시·군 종목단체장 표창은 제외.

Q 적용 예

☞ 임원이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재임기간 중에 장관상 1회, 중앙단체장상 1회를 받았다면,

이때 점수는 30점+20점 = 50점

평가점수(B) : 12점 획득

3. 이사회 참여율(10%)

대상	평가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임원	이사회 참여율	A. 모두 참석 B. 2회 이하 불참 C. 4회 이하 불참 D. 6회 이하 불참 E. 7회 이상 불참	10	10	8	6	4	2

○ 평가지표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군체육(장애인)회 이사회 참석 점수

4. 평가내용 : 기타 공적 및 공헌도 등(50%)

대상	평가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가결과			
				A	B	C	D
임원	공적조서	○ 정성적 평가 - 임원심의위원회 심의	50	50	40	30	20

○ 평가지표 : 공적 조서

○ 평가방법 : 공적 조서 → 임원심의위원회 심의

302 스포츠위원회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정 2018. 02. 08.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가평군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본회 규정 제2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회 및 가맹단체와 그 단체의 임직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가맹단체, 읍·면체육회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3.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가평군,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본회, 가맹단체, 읍·면체육회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하
3.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회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본회 규정 제30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가맹단체, 읍·면체육회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의결은 규정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가맹단체, 읍·면장애인 체육회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13조(표창 대상) 표창은 국제 및 전국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경기도 및 가평군, 가평군교육청 등 포상과 본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③ 가평군 및 가평군교육청 등의 포상은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본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 본회 정기표창에는 체육상 표창이 있다.

③ 체육상 표창은 매년 경기도체육상 시상식 개최 일에 실시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진흥

2. 생활체육 진흥

3. 학교체육 진흥

④ 국내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임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절차) ① 정부,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교육청 등 포상은 가맹단체의 장 및 읍·면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② 체육상은 가맹단체의 장, 읍·면장애인체육회의 장, 본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전자 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체육회 자체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스포츠인권센터

제17조(스포츠인권센터 설치) ① 본회,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회,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 등에 인권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는 선수권익침해 사안(무분별한 성별 확인 요구 포함)에 대하여 신고, 접수, 조사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8조(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①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인권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전문인력풀(이하 “전문인력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풀은 선수 및 지도자 출신자,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예방전문가, 법률전문가, 행정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가평군교육청 등)의 직원 등으로 구성하며, 읍·면장애인체육회는 3명 이상, 가맹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읍·면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에서 위촉한다.

④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해당 단체에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는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 여기는 경우 심의하여 규정 개정 등을 할 수 있다.

⑤ 전문인력풀 구성원은 해당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실태조사, 세미나 등 스포츠인권과 관련한 사업 및 본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인권 관련 행사(세미나, 공청회, 선수인권 관련 TF팀 구성, 실태조사 등) 등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징 계

제19조(위원회의 설치의무)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는 ‘가평군장애인체육회규정’ 제28조 및 ‘가맹단체규정’ 제36조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증거우선의 원칙) 제19조에 따른 본회,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별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읍면위원회”라 한다)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누구든지 본회, 가맹단체, 읍·면장애인체육회의 단체운영 및 대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시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⑤ 징계혐의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징계심사 도중에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본회, 가맹단체, 읍·면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2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본회는 가맹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과 읍·면장애인체육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다만, 가맹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본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 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23조(징계종류) ① 선수·지도자·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심판), 해임(지도자),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지도자)

②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를 수령하는 임원만을 말한다)

③ 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 경징계 : 견책, 감봉

제24조(징계요구) ① 본회는 위원회가 제21조에 따라 조사하고 징계대상과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의결한 경우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이 본회, 가맹단체, 읍면장애인체육회 임원인 사람은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해당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본회의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

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본회, 가맹단체, 읍면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는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본회, 가맹단체, 읍면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는 제21조 제1항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28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가평군수, 가평군교육감, 가평군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가평군장애인체육회 회장 이상의 표창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시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가맹단체, 읍·면장애인체육회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 사면이라 함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본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징계재심사(제21조 제5항의 사람만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본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본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경우, 종목 및 읍면장애인체육회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이 없는 한 본회 위원회가 징계를 임의로 감경 또는 강화할 수 없다.

⑤ 제21조 제5항의 사람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 재심사 신청은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본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가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이 없는 한 종목 및 읍면장애인체육회 위원회의 결정을 임의로 감경 또는 강화할 수 없다.

제31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발생 직후부터 본회, 종목 및 읍면장애인체육회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본회, 종목 및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본회, 종목 또는 읍면장애인체육회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본회, 종목,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본회, 종목,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단체는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30조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일 또는 재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의 효력 등) ① 본회, 종목 및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제30조제2항 또는 제31조제6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1조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및 재심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징계부가금) 위원회(본회, 종목, 읍면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는 제29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의 보고) 제19조에 따른 종목 또는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선수권의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종목 또는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종목위원회는 가평군대표 및 후보선수 및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읍면장애인체육회위원회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④ 본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가맹단체와 본회는 본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기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⑧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본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가맹단체 또는 읍면장애인체육회, 가평군교육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36조(행정처리) 가맹단체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지도자·동호인 심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9조(규정 제·개정) ①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이 규정은 가맹단체 및 읍·면장애인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부 칙 <제정 2018. 02.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27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 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출전정지·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3년 미만 ○ 중대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정직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강등 ○ 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
나. 단체/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견책 또는 출전정지·자격정지 1년 미만 ○ 중대한 경우 : 출전정지·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해임·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 정직, 해임, 파면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영구제명.해임
	직원	○ 정직 6개월 이상 또는 해임, 파면
라. 체육 관련 입시비리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직원	○ 해임 또는 파면
마. 폭력 (선수 또는 지도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라 징계한다)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선수 또는 지도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라 징계한다)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직원	○ 해임 또는 파면
사.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선수 또는 지도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라 징계한다)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감봉 6개월 이상 또는 정직 6개월 이상 ○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아.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선수 지도자 심판	○ 경미한 경우 : 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3년 미만 ○ 중대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해임
	임원	○ 경미한 경우 : 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3년 미만 ○ 중대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해임.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정직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강등 ○ 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27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분 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2.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 주동자 ○ 가담자	출전정지 1년 이상 출전정지 6개월 이하
3.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 가담자	출전정지 1년 이상 출전정지 6개월 이하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 가담자	무기한 자격정지 자격정지 5년 이상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공 적 조 서 (원본)			
1) 성 명	(한자)	2) 소 속	
3) 본 적			
4) 주 소			5) 주민등록 번호
6) 직위 및 직 급	7) 근무기간	8) 수공기간	
9) 추천훈열	10) 추천서열	11) 사정훈격	
주 요 경 력 (민간 및 군사학력과 경력)			
12) 년월일	13) 이 력	14) 년월일	15)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 년월일	17) 내 용	18) 년월일	19) 내 용
조 사 자			
20) 소 속			
21) 직 급		22) 직 책	
23) 성 명			
제반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뒷면)

공 적 사 항

<별지 제2호>

포 상 대 장

번호	시행 일자	종류	소속	직위및직급	성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수여 자	계인	비고

<별지 제3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계 혐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p>20 년 월 일</p> <p>가평군장애인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p>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tr> <td style="padding: 5px 20px;">위 원 장</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 20px;">인</td> </tr> <tr> <td style="padding: 5px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 20px;">인</td> </tr> <tr> <td style="padding: 5px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 20px;">인</td> </tr> <tr> <td style="padding: 5px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 20px;">인</td> </tr> <tr> <td style="padding: 5px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 20px;">인</td> </tr> <tr> <td style="padding: 5px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 20px;">인</td> </tr> <tr> <td style="padding: 5px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 20px;">인</td> </tr> </table>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400 사 무 관 리

401 사무국 운영 규정

사무국 운영 규정

제정 2018. 02. 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평군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정 제41조에 의하여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채용 및 승진

제2조(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평군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전형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재공고 이후에도 해당 직에 대한 채용 후보자가 채용 인원수에 미달될 때

2. 직무의 성질상 공개채용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심사, 면접시험, 인적성검사,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신규채용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해당직무와 동일한 경력 및 유사경력 1년 이상인 자는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면접시험 대상자는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2배수 이내로 선정하며 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2분의 1이상은 외부인으로 위촉해야 한다.

제3조(신규채용자 임용기준)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신규채용자격 기준표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자격기준은 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중소기업경력근로자 채용 가산점)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기준표에 의하여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채용고시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
3.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

제6조(구비서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 첨부) 1통.
3. 병적확인서(병역미필자에 한함) 1통.
4.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필요에 따라) 1통.
6. 주민등록 등초본 1통.
7. 서약서(본회 소정양식) 1통.
8. 면허증사본(기능직에 한함) 1통.
9. 사진(여권사진) 1매.
10.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함) 1통.

제7조(자격규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조(보직) ① 보직은 직급에 따르되 각자의 기능 경력 등을 감안하여 본회의 필요성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직급 미달자를 상위직급에 보직케 할 수 있으나 직 무대리로 한다.

② (순환보직 등) 동일부서 또는 동일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우선적으로 순환보직 한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업무상 순환 보직이 적합하지 아니한 직무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인사규정상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동일한 업무에 전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보라 함은 동일직종의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및 부서간 이동을 하는 것을 뜻하며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실적 우수 근무자가 타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반영 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제9조(승진)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 서열표에 의하여 동일직렬의 차하위에 있는 직원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시험방법에 의하여 해당직급에 임용하거나 사무국 편제의 개편, 부서의 신설 혹은 폐합 등으로 말미암아 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사무국 직원의 승진은 다음 각호의 기간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 재직 4년 이상
2. 6급 : 재직 3년 6개월 이상
3. 7급 및 8급 : 재직 2년 이상
4. 9급 : 재직 1년 6개월 이상

③ 기능직의 승진은 다음 각호의 기간 해당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및 8급 : 재직 2년 이상
2. 9급 : 재직 1년 6개월 이상

④ 전 제2항 및 제3항의 재직기간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임시직기간
2. 휴직기간(육아휴직 제외)
3. 정직기간
4. 직위해제기간

제10조(근무성적 평정) ① 사무직 및 기능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

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특별상여수당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 평정, 직무수행능력 평정, 직무수행태도 평정 및 기타요소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정한다.

제11조(승급) 직원의 승급은 1회 1호봉을 원칙으로 하고, 호봉수는 1호에서 32호까지 두며, 1개 호봉승급 소요기간은 1년으로 한다. 1일자로 시행한다.

제12조(특별승진, 승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자
2. 재해, 풍수해, 기타 천재지변을 당하여 본회 재산방호에 공로가 있는 자
3. 기타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히 그 공로가 있는 자

② 특별승진 및 승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 제2·3항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정직 : 18개월

나. 감 봉 : 12개월

다. 견 책 : 6개월

제14조(교육) 사무국 직원은 자질과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따로 정한다.

제3장 직능 및 업무분장

제15조(직렬분류) ① 본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일반직
2. 기능직

- ② 일반직의 직급은 5~9급으로 구분 한다.
- ③ 기능직의 직급은 6~9급으로 구분 한다.

제16조(임면) ① 사무직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 ② 기능직은 사무국장이 임면한다.

제17조(기구) ① 사무국에 다음 기구를 둔다.

1. 장애인체육팀

제18조(정원) ① 본회의 정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

- ② 사무국의 정원은 별표 제3호와 같다.

제19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및 전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행정 전반을 총괄한다.

제20조(팀장) 팀장은 팀원을 지휘 감독하며 팀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임시조직의 운영) 회장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적사업 도달 시 까지 임시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직원의 겸직 또는 파견)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체육관련 사업에 직원을 겸직 또는 파견 할 수 있다.

제23조(업무분장) 각 팀 업무분장은 별표 제4호와 같다.

제4장 복 무

제24조(직원의 임무) ① 직원은 법령 및 본회 규정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직원은 법률에 의한 공식선거에 있어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겸직금지) ① 직원은 본회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본회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27조(휴게시간) 직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시간외 및 야간근무) ① 회장은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 또는 야간근무(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9조(근태) 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지정된 시기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참으로 하며, 12시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이 근무시간 중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원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월 3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1일로, 월 3회를 초과하는 매 2회마다 무단결근 1일로 본다. 이 경우 결근일수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30조(휴일)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2. 본회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 3. 기타 정보 또는 본회에서 정한 휴일

② 주휴일은 매주 토·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휴가) ①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연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최고 한도를 25일로 하며, 1년 미만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 2.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제38조 제3항, 제6항 규정에 따른 휴가실시

④ 제2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본회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⑥ 사무로 인한 결근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⑦ 병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1.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2.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⑧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해야 할 때
-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 할 때
6.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의 경우

제32조(연가의 사용 촉진) 연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귀책사유는 직원에게 있다.

1.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 각자의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제1호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휴가의 사용을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3조(육아휴직) ①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을 따른다.

제34조(특별휴가) ① 임원 및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임신 초기 여성 직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③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에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 ④ 유산 또는 사산 경험 등의 사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⑤ 출산·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급여를 지급한다.
- ⑥ 임신 기간 중에는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신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 ⑦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⑧ 여직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⑨ 여성 직원은 월1회의 무급 생리휴가와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 ⑪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

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⑭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35조(출장) ①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간단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36조(사무인계) ① 사무인계는 팀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가 전보, 퇴직 및 휴직사유로 담당직을 떠날 때 또는 국외여행,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행한다.

② 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기록한 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직근 상급자가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후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날인하여 보관하고 그 1부는 사무국장일 경우에는 회장, 기타직원은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공무 이외의 질병 또는 상해로 말미암아 병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상해로 병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2. 전염병 감염으로 타 직원의 건강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5. 직제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6.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항 제1·2·6호의 경우는 1년 이내로 한다.
2. 전항 제3호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전항 제4·5호의 경우는 만 6개월로 하고 기간 내에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

직한다.

③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공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2·4·5호의 경우에는 봉급의 7할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제1항 제3·6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8조(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9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직능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사무국장) : 2년 임기제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만65세로 제한 한다.

2. 일반직·기능직 : 만60세

② 위 1호의 만 연령에 도달한 해당년에 생년월일이 6월 이전인 자는 6월 30일에, 7월 이후인 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③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정년퇴직일 전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명예퇴직 등)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무국 기구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41조(직위해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명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기회부여 등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제43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5.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7. 기타 이 규정이 별도로 정하고 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44조(처분사유 통보) 직원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행할 때에는 회장은 그 처분의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급 여

제45조(급여 구분) 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급 : 봉급
2. 상여수당
 - 가. 정근수당
 - 나. 정근수당 가산금
 - 다. 성과상여금
 - 라. 대우수당
3. 가계보전수당
 - 가. 가족수당
 - 나. 자녀학비보조수당
4. 특수근무수당
 - 가.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
 - 가. 시간외근무수당
 - 나. 야간근무수당
 - 다. 휴일근무수당
6. 실비변상 등
 - 가. 정액급식비

나. 직급보조비

다. 명절휴가비

라. 연가보상비

제46조(급여계산) ① 급여는 임명, 전보, 승진,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 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 지급한다.

② 급여의 지급기간 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일수에 산입한다.

③ 월중 면직한 경우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제47조(초임금) ①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의 초임금은 직급별로 규정된 최저호봉으로 기본급을 지급한다. 단, 해당직무와 동일한 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에 별표 제7호에 의한 경력 환산호봉을 가산한다.

②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시는 승진 전 호봉에서 1호봉을 하향 확정한다.

제48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9조(봉급감액) 본 규정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50조(기본급)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정근수당)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봉급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제52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대우수당) 직원중 해당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제54조(정근수당가산금) 장기근속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55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자녀학비 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제57조(특수업무수당) 자동차운전업무, 전기안전관리 등 기능 및 기술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8조(초과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9조(실비변상 등)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실비를 지급한다.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명절휴가비
4. 연가보상비

제6장 상 별

제60조(포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곤란한 업무를 수행한 자
3. 인사위원회에서 포상하기로 결정한 자

제61조(징계사유 등)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본회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5. 기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본회에 기여한 공적, 개선의 정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한다.

②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63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을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④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 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자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강등, 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⑥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64조(징계의결 요구서) 사무국장은 직원이 제6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6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67조(의결보고)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징계의결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집행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의결기관,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9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70조(의원면직 제한제도)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임직원의 피의사실이 제69조 제2항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시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71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재직중인 임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제70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72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제70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퇴 직 금

제73조(퇴직금) ① 사무국 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회장은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직원과 협의 하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퇴직연금에 가입코자 하는 직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74조(기금조성) ① 퇴직기금은 본회에서 기여하는 퇴직적립금의 원금과 이자로서 조성하며 이를 별도로 계정한다.

② 본회의 퇴직적립금은 본회 정원에 의한 매 회계 연도 급여예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5조(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한 달이 속하는 해의 연간 보수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최저기준액보다 적

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⑥ 제73조 제2항에 의거 중간정산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의 퇴직금은 총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률에서 중간정산 지급률을 공제한 지급률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6조(근속연한 계산) 근속연한은 발령일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월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달로 계산한다.

제77조(근속결격) 정직기간 및 법정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및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은 근무연한에 통산한다.

제78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중 유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통화로서 지급한다.

제8장 여 비

제80조(여비) ① 직원이 본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로 출장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내 출장여비는 월액 여비를 지급하며 관외출장과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 출장 중 공무로 인한 상해 또는 질환으로 여행지에 체재하는 때에는 그 일수를 출장일수에 추가 산입한다. 이 경우 귀임 후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81조(보상) ① 업무상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공상을 입었을 시 그 치료 및 입원에 관하여 본회에서 책임 조치한다.

부 칙 <제정 2018. 02.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규채용자 자격기준표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직	4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 한 자 3.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 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 한 자 3.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 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 자 2. 국가 또는 지방 7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 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 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 자 또는 2년제 대학 졸업자로 7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 자 2. 국가 또는 지방 7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 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 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급	1. 4년제 대학 졸업자와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정부투자기관의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4. 학력, 경력과 자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직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직	9급	1. 정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능직 ()는	8급	1. 운전면허 보통 1종 소지자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2. 기사 2급,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2년), 다기능 기술자(2년)
실무 경력	9급	1. 운전면허 보통 1종 2. 기능사 2급

※ 체육분야 경력자란 체육기관 및 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 체육회 등)에 한해서 해당. (체육시설업, 체육업 종사자 제외)

<별표 제2호>

중소기업 경력근로자 채용 가산점

□ 가점기준(2%~10%) : 필기(서류전형)시험 및 면접시험 공통

구 분	사무직경력			생산직경력			비고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가 점	2%	4%	8%	3%	5%	10%	총점 100점 기준

- 가점산출 : 생산직 근무기간 우선 적용 가점을 산출하고, 2년 이상 사무직 경력이 있을 경우에 추가 적용
- 경력인정 :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력
- 확인서류 : 중소기업 판단은 경기중소기업청 협조확인 경력은 해당 기업의 재직증명서, 고용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별표 제3호>

사무국 정원표

직 능 별		정 원
합 계		3
임 원	소 계	1
	사무국장	1
일 반 직	소 계	2
	5 급	-
	6 급	-
	7 급	1
	8 ~ 9 급	1

업 무 분 장 표

부서별	분 장 업 무
운 영 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운영 2.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사 및 상훈에 관한 사항 4. 기구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업무에 관한 사항 6. 규정 제정 및 개정 7.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예산·결산,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9.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연금 및 제보험 관리, 퇴직금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차량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14. 사무분장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15. 감사에 관한 사항 16. 가맹단체 관리 및 지원 17.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 18. 중앙(도)의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9. 전국(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20. 가평군장애인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별표 제5호>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별표 제6호>

경력년수 환산표

경력별	구 분	환산율
갑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장애인,국민생활)체육회, 시·도(장애인,생활)체육회, 시·군·구(장애인,생활)체육회 사무국 경력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경력 ○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체육 분야 전문직 경력 ※ 경노무 고용원 근무경력 제외 ○ 동일직종(운전, 기계 및 전기설비, 전산프로그램 제작 등)의 경력 	100%
을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종목단체 사무국 경력 ○ 대한(장애인,국민생활)체육회, 시·도(장애인,생활)체육회, 시·군·구(장애인,생활)체육회 사무국 경력(지도자 포함) ○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 경력 ○ 전산 전문업체에서 전산프로그램 운용경력 	80%
병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장애인,국민생활)체육회, 시·도(장애인, 생활)체육회 경노무 고용원 근속 기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한 임시직 경력 ○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 ○ 일반기업 전산관련 업무경력 ○ 기타 해당업무의 규모, 성격, 근무경력의 내용정도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 	50%

<별지 제7호>

사무국직원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③ 직위(급)	
		한자	④ 주 민 등록번호	⑤ 재직기간	
	⑥ 주 소				
⑦ 징계사유					
⑧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결					
<p>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p> <p>20 년 월 일</p> <p>가평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p> <p>가평군장애인체육회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p>					

402 근무성적 평가 내규

근무성적 평정 내규

제정 2018. 02. 08.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가평군장애인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사무국운영 규정 제10조(근무성적 평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평정(評定)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내규에서 평정이라 함은 피평정 대상 직원에 대한 근무 및 업무추진 실적·능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 근무성적의 평정은 사무국장을 제외한 본회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정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은 평정기간 중의 근무 및 업무실적·수행능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부서별로 상이한 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한다.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토록 평정한다.
4.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정한다.

제5조(평정의 종류) ① 근무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 ② 정기평정은 승진·승급 및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③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에 따라 특별히 실시하되 그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평정시기) 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7조(평정도) 근무성적 평정은 일반 및 기능직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8조(평정자와 확인자) 부서별·직급별 근무성적 평정자(이하“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 평정 확인자(이하“확인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원의 평정은 팀장이 하며 과장이 확인한다.
2. 팀장의 평정은 과장이 하며 사무국장 확인한다.
3. 과장의 평정과 확인은 사무국장이 한다.
4. 전 각항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사고로 인하여 평정 및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

대행자가 실시한다.

제9조(평정의 예외) ① 직원의 휴직, 직위해제, 기타사유로 6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이 휴직이후 복직 또는 신규임용, 승진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현재 그 기간이 2월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10조(평정점수의 분포비율) ① 평정점과 확인점의 최고점수는 각 50점으로 하며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부서 및 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사실을 기초로 평정하되 분포비율을 참조한다.

1. 수(90~100점) : 2할(표준 이상으로 우수한 경우)
2. 우(75~89점) : 4할(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도의 경우)
3. 양(50~74점) : 3할(불만족스러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4. 가(50점미만) : 1할(매우 불만족스러우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③ 평정결과가 제2항의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평정자에게 반송하여 재작성 하게 할 수 있다.

④ “가” 평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현 업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자.
2. 해당부서는 물론, 각 부서간 업무협조와 화합의 저해 등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3.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자. (무단결근, 잦은 지각 및 조퇴, 기타)

제11조(평정절차) 근무성적 평정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사무국장은 근무성적평정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20일 전에 직원 근무성적 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를 각 평정자에게 배포한다.
2. 평정자는 전호의 평정표를 받은 즉시 피평정자에게 배포하고, 피평정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평정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평정자는 피평정자로부터 평정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정을 완료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4. 사무국장은 평정자로부터 제출된 평정표에 의하여 확인하고 부서 및 직급별로 <별지2호>의 근무성적 평정 순위표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비치한다.

제12조(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승진·승급·보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13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대외비로 취급한다.

부 칙 <제정 2018. 02.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회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평정 지침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일반직(기능직) 근무성적 평정표								
평정기간 :		부터	까지	작성일자 :		년	월	일
1. 피평정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교육훈련사항								
상별사항								
2. 근무실적								
작성자(본인)			성명 :			문		

<별지 제2호>

근무성적 평정 순위표

직종 :

직 급	부 서	성 명	임 용 일 (년, 개월)	현 호 봉	평정점수	평정순위